[서식 예]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(경매개시결정된 뒤 등기한 근저당권자)



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

사 건 20○○타경○○○○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채 권 자 ○○○ 채무자 겸 소유자 ◇◇◇

권리신고인 겸 배당요구채권자(근저당권자) ●●●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귀원 20○○타경○○○○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권리신고 인 겸 배당요구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4호에 해당하는 이해 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합니다.

아 래

1. 권리신고

권리신고인 겸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매개시결정된 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입니다.

내역: 권리신고인 겸 배당요구채권자는 ○○지방법원 ○○등기소 20○○. ○. ○. 접수 제○○○호 20○○. ○. ○.설정계약, 채권최고액 금 ○○○원, 채무자 ◇◇◇, 근저당권자 ◉◉©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.

2. 배당요구

권리신고인 겸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매개시결정된 뒤의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합니다.

청구금액: **원금 ㅇㅇㅇ원** 및 이에 대한 20ㅇㅇ. ㅇ. ㅇ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ㅇㅇ%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

첨 부 서 류



1.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

1.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

2000. 0. 0.

위 권리신고인 겸 배당요구채권자

●●● (서명 또는 날인)

			X V
제출법원	경매법원	배당요구 시기	※ 아래(1)참조 MAN
제출부수	신청서 1부 및 이해관계 인수만큼 부본첨부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90조제4항, 제 268조, 제88조,
म्रो 😣	・인지액 : 불첩부		

※ (1) 배당요구시기

〈유체동산〉(민사집행법 제220조)

- ①배당요구는 다음 시기까지 할 수 있다.
 - 1.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
 - 2. 집행관이 어음·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을 받은 때
- ②민사집행법 제198조제4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, 민사집행법 제29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.

〈채권과 다른 재산권〉(민사집행법 제247조)

- ① 민법·상법,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.
 - 1.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
 - 2.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
 - 3.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
-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함.
-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민사집행법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함.
- ④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.

〈부동산〉(민사집행법 제88조)

-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,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, 민법·상법,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.
-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함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